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11

발의연월일: 2021. 7. 20.

발 의 자:이규민·김민철·김승원

민형배 · 송갑석 · 양기대

용혜인 • 이성만 • 이수진

정청래 · 홍정민 · 황운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되고 있어 이 밖에 앵무새나 거북이 등 동물의 소유자 등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이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 법에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만을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그 외의 동물들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한편, 현재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괴리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들의 수요가 상당하고, 동물장묘시설에 대형견의 처리를 위한 대형 화장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의 종류에 고슴도치, 앵무새, 거북이 등을 명시하여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매장 등의 방법으로도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사체 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지원하며, 동물장묘업에 이동식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 설에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2조제1호의3,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3 중 "고양이 등"을 "고양이, 고슴도치, 앵무새, 거북이 등"으로 한다.

제15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를"을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한다.

제22조제3항 중 "동물장묘시설"을 "동물장묘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그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이동식 영업을 포함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7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1의2. (생 략) | 1.・1의2. (현행과 같음) |
|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 | 1의3 |
| 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 | |
| <u>양이 등</u> 농림축산식품부령으 | 고양이, 고슴도치, 앵무새, 거 |
| 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북이 등 |
| |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
| 등) ① ~ ⑥ (생 략) |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⑦ |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 |
|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u>,</u> _ |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u>제22조를</u> 위반한 경우 | 5.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u> </u> |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 ⑧ ~ ⑩ (생 략) | ⑧ ∼ ⑩ (현행과 같음) |
| 제22조(동묵의 인도적인 처리 등) |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① · ② (생 략)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처리하여야한다.

<신 설>

<신 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③ |
| |
| |
| |
| |
| <u>동물장묘시설(이</u> |
| 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 |
|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
| 보호센터의 장이 제3항에 따라 |
| 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 |
| 서 처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 |
| 서 사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
| <u>수 있다.</u> |
| 세22조의2(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
|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죽은 |
| 경우 그 사체를 동물장묘시설 |
| 에서 처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 |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
| 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
| <u>한다.</u> |
| 네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 드) ① |
| |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 2. ~ 8. (생략)
- ② (생략)
-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저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있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 략) <신 설>

<u>5의2.</u> (생 략) 6. ~ 15. (생 략)

③ • ④ (생 략)

| <u>.</u> |
|-----------------------------|
|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이 |
| 동식 영업을 포함한다) |
| 2. ~ 8.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
| 설치·운영 등) ① |
| |
| |
| |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 |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
| 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 |
|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
|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
| <u>.</u> |
| 1. ~ 5. (현행과 같음) |
| <u>5</u> 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반 |
| 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자 |
| <u>5의3.</u>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
| 6. ~ 15. (현행과 같음) |
| ③·④ (현행과 같음) |